간 행 물 관 리 번 호
KYWA-2022-079-10

2022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례집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란?

청소년활동 시 수반되는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항 상담 및 안전한 시설운영과 관련한 법률 해석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 참여자(기관, 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범위

상담범위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성범죄, 시설물, 위생(음식, 식중독), 기타 안전 등에 관련한 사항
청소년활동 운영사항	청소년시설(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지도자, 활동시설)에 관한 법령 해석 및 자문,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 등에 관한사항 등

※ 청소년활동 및 안전과 관련이 없거나 신청자(기관)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운영기관 관계자, 활동지도자, 참가자,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누구나

상담절차 및 방식

온라인 신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누리집 (www.kywa.or.kr) > 사업소개 > 청소년지원사업 >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 안전법률상담 신청하기

신청내용 접수
상담내용 확인, 일정 및 상담방식 협의

안전법률상담 실시
서면 또는 유선상담
※ 중대 사안의 경우 방문상담 가능

소견서 송부

상담내용

- 해당 사고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신청 사고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 대처방안 및 적법한 처리방법 안내

contents

[활동운영 관련]

사례 01. 입찰 · 신청 등을 통해 학교 단체활동을 수탁 할 경우 모집의 정의 4

사례 02. 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 위탁 시 관련 기관의 법적 지위 등 6

사례 03. 일정규모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 제한에 따른 단체 및 개인의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의 범위 9

사례 04. 청소년활동 운영에 따른 제작물의 서체 저작권 침해 사항 및 대응 13

사례 05. 유스호스텔의 허가 범위 외 야외활동 가능 여부 19

사례 06. 일회성 체험활동 운영 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여부 23

사례 07. 비영리로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 시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도자의 범죄경력조회 가능 여부 29

[안전사고 관련]

사례 01. 청소년수련시설이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과실에 따른 보상 범위 38

[지도자 관련]

사례 01. 외부 출장 시 출장장소 이동시간의 시간외 근무 포함 여부 41

[활동시설 관련]

사례 01. 수련시설에 인공암벽 설치 시 체육시설법의 시설 및 안전 · 위생 기준 준수 필요 여부 45

[청소년활동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 안내]

▶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사용 관련 주의사항 47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2

※ 본 사례집에 소개된 안전법률상담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사례 01

활동운영 관련

상담개요

수련시설이 입찰, 신청 등을 통해 학교 등 단체 활동을 수탁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명생략) 제9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신고 수리 전 모집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리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소견내용

법 제9조의2 제4항에서 모집활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수련활동 주최자가 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수련활동 신청을 받아 무신고 수련활동을 하게 될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할 기관을 뽑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고, 이에 수련시설이 입찰하게 되면 입찰 시기가 수련활동계획 신고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질의내용은 위와 같이 수련시설의 입찰 시기가 수련활동계획 신고 수리 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법 제9조의2 제4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모집을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도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모집’의 의미에 관하여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모집’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참조).

즉, 모집활동이란 계약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게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후 그 가운데 대상자를 고르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본 질의사안와 같은 입찰이나 신청은 수련활동 주최자의 수련활동계획 신고 전 모집행위라보기 어렵고, 발주자에 대한 일방적인 청약의 성격을 가지는바 모집의 사전적 정의에도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아 법 제9조의2 제4항에 위배되지 않으리라 사료됨.

다만, 법 제9조의2 제1항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 되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 또는 보조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신고는 자기완결적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상당함.

그렇다면 위 신고는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4항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미리 모집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수련시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모집행위를 하는 것과 학교 등 단체의 모집활동에 입찰, 신청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다르게 볼 이유는 없으므로, 학교 등 단체의 모집활동에 입찰, 신청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법 제9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신고 수리 전 모집활동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사례 02

활동운영 관련

상담개요

A청소년수련관이 B유스호스텔을 대관하여 활동의 일부를 B유스호스텔이 운영하도록 하고 A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

- 관련기관의 법적지위
- A청소년수련관이 보험을 든 활동을 B유스호스텔에서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한 것도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것이「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명생략)제39조를 위배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 법인 · 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 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은 법인 · 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소견내용

가. 관련기관의 법적 지위

1) A청소년수련관은 주최자이며 실시자도 될 수 있음

법 제36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직접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이자 실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2) B유스호스텔은 법제39조에 따른 실시자(수탁받은 자)에 해당함

법 제39조는 제1항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은 법인 · 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받은 자도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자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B유스호스텔이 A청소년수련관이 주최하는 활동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B유스호스텔은 법 제39조에 따른 실시자에 해당함.

사례 02

활동운영 관련

나. A청소년수련관이 보험 든 활동을 B유스호스텔에서 다시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한 것도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6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A청소년수련관이 보험 든 활동을 B유스호스텔에서 다시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한 것은 위탁(정확히는 재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다. A청소년수련관이 보험 든 활동을 B유스호스텔에서 다시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한 것이 법 제39조를 위배한 것인지 여부

법 제39조 제1항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은 법인 · 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상대방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음.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청소년수련관이 보험 든 활동을 B유스호스텔에서 다시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한 것도 (재)위탁에 해당하므로, 만일 활동을 수탁받은 제3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은 법인 · 단체 및 개인이 아니라면, 그 (재)위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를 위배한 것이라 판단될 소지가 있음.

사례 03

활동운영 관련

상담개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한 사업자 또는 상법상의 영리법인도「청소년 활동 진흥법」제9조의6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 등) ③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례 03

활동운영 관련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해제 · 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 · 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및 미용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의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견내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의 취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의 입법 취지는 응급처치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진행할만한 장소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안전을 확보하고 사전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전반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6의“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주최·실시와 수련 시설의 설치·운영과는 무관한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주최·실시와 수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확보, 위험 발생의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짐

나. ‘이 법에 따른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의 의미

우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은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03

활동운영 관련

그리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허가, 등록'이란, 각각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 등을 의미함이 비교적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임.

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 포함 범위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제33조 제1항과 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수련시설의 허가와 등록을 마친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주최·실시와 수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에서 지칭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규 사업을 알림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의 주최·실시와 수련 시설의 설치·운영과는 사실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에서 지칭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결 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한 사업자 또는 상법상의 영리법인이라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라 판단될 것으로 사료됨.

사례 04

활동운영 관련

상담개요

청소년 행사 운영 시 제작한 행사지 관련하여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문제 된 경우,
- 대행업체를 통한 저작물일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여부
- 직원이 직접 제작했을 경우 대응 절차 및 방법(저작권침해 서체임을 모르고 제작)
- 활용 범위(비상업목적, 오프라인 특정 대상에게 활용, 온라인 특정 대상 활용 등)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리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 ·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04

활동운영 관련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 배포 ·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사례 04

활동운영 관련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례 04

활동운영 관련

소견내용

1. 대행업체를 통한 저작물일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여부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의 경우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대행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침해 책임은 대행업체에 있음.

그러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 행사지 등)에 대해서는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미치지 않음.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는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서체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저작물 발주기관은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함이 없이)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다면, 서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임.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야만 저작물을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작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외주 제작업체가 작업한 결과물을 단순 확인만을 하기 위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였다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2. 직원이 직접 제작했을 경우 대응 절차 및 방법(저작권침해 서체임을 모르고 제작)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내부 직원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됨.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직원이 저작권침해 서체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면책되지 않음.

다만, 회사가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면책되므로, 회사가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정황을 입증자료로 확보해 둠을 권장함.

한편,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남용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사범의 양상 방지를 위하여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되고 있음. 이는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사건으로 동종전과가 없고 비영리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임.

사안의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비영리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로 저작권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비영리 목적으로 범행하였음을 밝히는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권고함.

다만, 형사상 기소가 유예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저작권침해 저작물의 영리 목적 이용을 중단, 확산방지를 위해 게시물을 내리거나 출력물이라면 배포한 출력물을 최대한 수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짐.

3. 활용 범위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사례 04

활동운영 관련

「저작권법」에 따르면, 재판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제24조의2), 학교교육 목적 등에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제25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제31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제32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한편,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의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할 때 허용됨.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 방송할 수 있으며(제29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제30조).

이외에도 제35조의5에 따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용 범위(비상업목적, 오프라인 특정 대상에게 활용, 온라인 특정 대상 활용 등)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사례 05

활동운영 관련

상담개요

A리조트 유스호스텔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 부분에 콘도업과 수련시설업 등이 기재된 A리조트에 소속된 사업부로서, A리조트로부터 그 소유의 야외무대와 잔디 공간을 영구 임대하여 그곳에서 야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현행「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위배 여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 문화 ·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 설비와 부대 ·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 · 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 등) ③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 · 인가 · 해제 · 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소견내용

1. A리조트 유스호스텔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허가나 등록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단순히 A리조트로부터 그 소유의 야외무대와 잔디 공간을 영구 임대하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야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위배 여부(=위법)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목적과 취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목적과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A리조트가 별도로 그 소유의 야외무대와 잔디 공간에 관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바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증에 수련시설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A리조트 유스호스텔이 A리조트 소유 야외무대와 잔디 공간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사례 05

활동운영 관련

2. A리조트 유스호스텔이 적법하게 A리조트로부터 그 소유의 야외무대와 잔디 공간에서 야외 활동을 진행할 방안(A리조트가 해당 부지에 관하여 추가로 허가를 받는 방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1호 바목은 유스호스텔의 경우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 · 설비의 범위에 한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1조를 살펴보면 제3항에서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할 수 있음.

위 제11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5호에서는 “법 제11조 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는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음.

그리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A리조트로부터 영구 임대한 그 소유의 야외무대와 잔디 공간이 위 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사례 06

활동운영 관련

상담개요

만 13세 미만 청소년 8명을 포함하여 청소년 총 15명을 활동장으로 1회 왕복 이동하기 위하여 대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사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상황과 관련하여,

- 1회성 체험학습을 위한 이동도 '통학 등'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청소년수련관이 통학을 위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하여야 하더라도 체험학습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무방할지 여부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발급받아야 할 서류 등
- 어린이통학버스 임차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최소 필요한 동승 보호자 수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사례 06

활동운영 관련

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 군 · 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 · 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사례 06

활동운영 관련

소견내용

1. 1회성 체험학습을 위한 이동도 '통학 등'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우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통학'이란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에 비추어 위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어린이가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에서 각 목의 시설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오고 가기 위하여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함이 법률 문언상 명백함.

이때, 위 규정은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통학 등'이라고 명시한바, 통학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와 같은 종류의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2020. 5. 26. 위 법을 개정하면서 바목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 추가되었는데, 개정이유가 각 목의 시설에서 실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다면 그 운용이 일반 승합자동차와 다름없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하면, 각 목의 시설에서 1회성으로 왕복 운행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짐.

2. 청소년수련관이 통학을 위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하여야 하더라도 체험학습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무방할지 여부

「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서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바목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하는 한, 비록 통학 이외 1회성 체험학습 장소로의 이동이라 할지라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발급받아야 할 서류 등

① 신고증명서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 비치하여야 함.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의 충족, 어린이보호표지의 부착,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의 운송계약 체결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1)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법 제2조 제32호), 2)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보호표지의 부착, 3)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 4)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의 운송계약 체결이 요구됨.

③ 어린이통학버스 교육확인증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게 안전교육 이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교육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동조 제5항에 따라 운영자의 경우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에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사례 06

활동운영 관련

④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 「교통안전법」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4. 어린이통학버스 임차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임차계약 시에는 위와 같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요건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보험(공제) 가입 증빙자료,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확인증,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사항,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안전벨, 동작감지센서, 좌석확인벨)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함.

5.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최소 필요한 동승보호자 수

「도로교통법」제53조 제3항 및 제154조 제3호의2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소 필요한 동승보호자 수는 정하지 않고 있음

사례 07

활동운영 관련

상담개요

공모에 응모하는 기관 중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소년활동을 기획, 주관,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공모에 선정되어 청소년 국제활동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도자 또는 인솔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근거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 · 국적회복 ·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 · 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 교습소 및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례 07

활동운영 관련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 주관 ·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 · 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 · 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 ·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 · 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 ·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 · 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 ·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 ·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⑤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 07

활동운영 관련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 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소견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범죄경력회보 요청이 가능함.

사례 07

활동운영 관련

1.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가능여부 (=가능)

우선,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관련기관'으로 '13.「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기획·주관·운영하는 시설 또는 단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아동관련기관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활동을 기획·주관·운영하는 시설 또는 단체라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을 근거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은 조회가 가능함.

2. 성범죄전력 조회 가능여부 (=불가능)

이에 반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과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 주관 · 운영을 하는 사업장'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 문언 기재상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 · 주관 · 운영을 하는 경우에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를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만일 청소년수련활동을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같은 조문 제5항 제1호에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근거로 범죄전력조회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다른 법률에서 지도 ·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5항을 근거로 범죄전력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임.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소년활동을 기획·주관·운영하는 시설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 률」제56조 제5항에 따른 성범죄 전력 조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결 론

결론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활동을 기획·주관·운영하는 시설 또는 단체라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을 근거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성범죄 전력 조회는 불가능해 보임.

이외 다른 법률에서 범죄 전력 조회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근거로 합법적인 조회를 요구하기는 일응 어려우리라 사료됨.

사례 01

안전사고 관련

상담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이 개최한 청소년피구대회 당일 청소년 한 명이 상대 팀 청소년이 던진 피구 공에 다리를 맞아 넘어지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고, 운영진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받도록 하였는데, 검사 결과 골절과 인대파열이 의심되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반깁스를 한 후 귀가하였으나, 이후 부상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날 수술 진행함.

- 위 운영기관이 대회 운영에 앞서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이 '청소년활동배상', 목적물 사항이 '2022년 청소년피구대회', 가입물건이 '청소년활동'이고, 본 건 사고가 2022년 청소년피구대회 중 청소년활동 간 발생한 사고임에도,
- 보험사로부터 대회를 주최한 수련시설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본 사고가 참여 청소년의 과실로 인정될 경우 보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관련법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견내용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운영기관은 2022년 청소년 피구대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자 청소년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기간을 '행사일 종일'에 적용, 목적물 구분을 '청소년활동배상', 목적물 사항을 '2022년 청소년피구대회', 가입물건을 '청소년활동'으로 정하고, 대인 보상한도액을 1인당 8천만 원, 1사고당 무한으로 정하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함.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관리, 운영 또는 주최하는 청소년활동의 참가자에게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청소년활동 수행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한 후,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손해로 명시하고 있었음.

본 건 사고는 피구 경기 중 청소년이 상대 팀 청소년이 던진 피구 공에 다리를 맞아 넘어지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침에 따라 발생하였는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운영기관이 주최한 청소년활동으로서 보험증권 기재상 목적물 사항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2022년 청소년피구대회의 참가자에게 보험기간 중 청소년활동 수행지역 내 위 피구대회 수행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사고 발생에는 이 사건 운영기관의 참가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운영기관이 참가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 그렇다면 이 사건 운영기관에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는 이 사건 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한편, 동 약관 제4조에서는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참가자가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을 임의로 이탈한 상태에서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청소년활동

사례 01

안전사고 관련

수행 중에 참가자가 피보험자(청소년활동 진행요원 등 포함)의 정상적인 관리, 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참가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었음.

본 건 사고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청소년과 경기 중 공을 던진 상대 팀 청소년 모두 상해에 고의성이 없어 보이며, 참가자의 청소년 활동 수행지역 이탈, 진행요원 등의 관리 통제에 대한 고의적인 불응, 자해 또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등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운데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이처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성 없음이 명백하고, 보험금 청구에 이르자 보험사에서 약관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던 '청소년의 과실에 의한 신체상 손해 발생'의 경우까지 보상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험약관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고 거래 관념상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보상대상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사례 01

지도자 관련

상담개요

- 외부 출장 시 출장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시간외 근무에 포함되어 시간외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 외부 보조강사와 동행할 경우 이동 소요시간도 시간외근무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산재보험 적용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노동부 유권해석 - 근기 68207-1909(2021. 6. 14.)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며,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

사례 01

지도자 관련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

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소견내용

나. 외부 출장 시 출장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시간외 근무에 포함되어 시간외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통상의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노동부 유권해석 근기68207-1909(2021. 6. 14.)에 따르면, 근무지 외 출장지로의 이동과 같은 업무상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짐.

위와 같은 법률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외부 출장 시 출장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통상의 출퇴근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며, 그 결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다. 외부 보조강사와 동행할 경우 이동 소요시간도 시간외근무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위 나.항의 취지와 같이, 외부 보조강사와 동행하여 이동하는 경우 그 동행 행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비하는 시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외부 보조강사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 소요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이동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사례 01

지도자 관련

라. 외부 보조강사와 동행할 경우 이동 소요시간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가 포함됨.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출장 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인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나아가 대법원은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

따라서 외부 보조강사가 출장길에 동행하여 출장지로의 정상적인 이동 또는 복귀 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사례 01

활동시설 관련

상담개요

수련시설에 설치된 인공암벽도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제23조의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의제) 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및 미용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의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 위생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사례 01

활동시설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안전 · 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 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소견내용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하면,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됨. 즉, 수련시설을 등록할 때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는 의제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지 않는 한, 수련시설 등록을 한 자는 자동으로 체육시설업자 신고도 한 것으로 인정됨.

그에 따라 수련시설 등록을 한 자도 다른 체육시설업자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수련시설에 인공암벽을 설치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제23조의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청소년활동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 안내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사용 관련 주의사항(탑승 및 안전기준 등)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라“차”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함.
- 2021. 5. 13.부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에 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음.

1. 자전거 운전자 확인사항

-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kg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
-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나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통행할 수 없음.
-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도 통행 가능함.
-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함.
-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함.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시 범칙금 1만원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면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 양보할 의무 있으며,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함.
-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함.
-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시 범칙금 3만원
-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시 범칙금2만원
- '밤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전조등을 켜야 함.
  *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시 범칙금 1만원
-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함.

*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펼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6. 서행할 때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 것

2. 전동킥보드 운전자 확인사항

-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취득 이상 보유자.
  *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 부과
  * 13세 미만 사용자 운전 금지(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최고 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이용.
- 판매장소(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 제품, 포장 등에 KC 마크와 안전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탑승.
- 보도 주행 중 인명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 보험 가입 여부 및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
- (처벌규정) ①안전모 미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과 동승자 과태료 2만원 각 부과, ②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부과, ③등화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부과, ④과로·약물 등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보호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⑥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⑦13세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비교)

종류	면허 취득 유무	도로 이용	착용 필수 보호장구
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용 안전모
전동 킥보드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도로 통행 (없을 시 차도 통행), 단, 보도통행 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3.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탑승 전 준비사항

- 자신의 신체, 체형, 크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
-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눈에 잘 띌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
- 바퀴에 낄 위험이 있는 넓은 바지, 긴 치마 등의 의류의 착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끈이 짧은 신발을 착용.

-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
- 자전거는 브레이크-핸들-안장-페달-타이어공기압-전조등-후미등 순으로 점검, 전동 킥보드는 브레이크-핸들-라이트-바퀴 순으로 점검.
- 부속 제품이 리콜 대상에 해당되면 즉시 사용 중지.

4.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공통사항	- 주행 중 핸드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꼽는 등의 행위 하지 않기 -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기 - 주변 차량 및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 속도를 준수하기 - 횡단보도를 건널 시 반드시 하차 후 끌면서 이동하기 - 병렬주행 표지가 없는 곳에서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하지 않기 - 야간 운행 시 전조증과 후미등을 장착하기
자전거	-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20km/h,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15km/h 내외로 이동하기 - 자전거 표지판을 숙지하고 운행 시 내용 준수하기 - 갑작스러운 정지를 해야 할 경우 뒤 브레이크를 먼저 잡은 후에 앞 브레이크를 잡아 정지하기 * 앞 브레이크만 사용하여 정지할 경우 자전거가 전복될 위험이 있음
전동 킥보드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며 운행하기 - 승차 인원을 초과하지 않고 반드시 혼자 탑승하기 - 비탈길, 도로가 부러진 곳 등에서는 속력을 낮춰 서행하기 - 저속에서 브레이크 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 제품 문제 발생 시 임의로 수리하지 않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5.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
-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장소, 부상 정도, 후속 조치 사항 등을 신고.
-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처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수련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므로,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관련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 ·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 제조 · 판매 ·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 · 제4호 및 제2항제1호 ·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

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 · 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 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전 사업장(단,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적용 배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 사업장(단,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규정 적용 제외)

2.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야기한 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야기한 재해.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재해의 발생시 처벌내용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불가능.

나. 법인 또는 기관등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022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례집

발 행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발 행 일 2022년 12월

디자인 · 인쇄 사)강동장애인협회 정다운 우리들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사례집에 소개된 안전법률상담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022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례집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